

## 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 (행복한 가족) 적금 』 특약 (구 외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구행명 삭제, 기본적용약관 변경, 적립방법 표현명확화, 분할해지방식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	~
<p><b>제1조 약관의 적용</b></p> <p><u>(행복한 가족)적금(구 외환은행)</u>(이하 '이 적금'이라 합니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<u>'예금거래기본약관'(구외환은행) 및 '적립식예금약관'(구 외환은행)</u>을 적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:</p> <p>제2조 ~ 제5조 (생략)</p> <p><b>제6조 가입금액 및 저축방법</b></p> <p>이 적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이상 1천만원 까지로 매월 1천만원 한도내에서 금액과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할 수 있습니다. <u>다만, 계약기간의 3/4이 지난 때에는 기 적립한 금액의 1/2를 초과 입금할 수 없습니다.</u></p> <p><b>제7조 분할해지</b></p> <p>이 적금의 계약기간중 최종 해지분을 포함하여 5회이내에서 <u>선입선출방식에 따라</u> 분할해지가 가능하며, 분할해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간별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8조</b></p> <p>- 추가거래우대: 본인명의 외환은행의 ~(생략)</p> <p>제9조 (생략)</p>	<p><b>제1조 약관의 적용</b></p> <p><u>(행복한 가족)적금</u>(이하 '이 적금'이라 합니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<u>'예금거래기본약관' 및 '적립식예금약관'</u>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2조 ~ 제5조 (좌동)</p> <p><b>제6조 가입금액 및 저축방법</b></p> <p>이 적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이상 1천만원 까지로 매월 1천만원 한도내에서 금액과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<u>다만 계약기간 3/4 경과후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에는 경과전 납입한 적립잔액의 1/2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.</u></p> <p><b>제7조 분할해지</b></p> <p>이 적금의 계약기간중 최종해지분을 포함 하여53회이내에서 <u>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</u> 해지가 가능하며, 분할해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간별 중도해지금리를 적용 합니다.</p> <p><b>제8조</b></p> <p>- 추거래우대:본인명의 당행의 ~(생략)</p> <p>제9조 (좌동)</p>	<p>구행명 삭제, 기본적용약관 변경</p> <p>3/4계약기간 경과후 적립가능한도 표현 명확화</p> <p>분할해지 계산방식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</p>

## 「(행복한 가족) 적금 특약」

### 제1조 약관의 적용

(행복한 가족)적금(이하 '이 적금'이라 합니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'예금거래기본약관' 및 '적립식예금약관'을 적용합니다.

### 제2조 가입대상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

### 제3조 가입제한

이 적금의 가입은 1인 1계좌로 제한합니다.

### 제4조 상품명

이 적금의 상품명 (행복한 가족)은 고객이 지정하는 상품명을 사용합니다.

### 제5조 계약기간

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1년, 2년, 3년으로 합니다.

### 제6조 가입금액 및 적립방법

이 적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이상 1천만원 까지로 매월 1천만원 한도내에서 금액과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3/4 경과후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에는 경과전 납입한 적립잔액의 1/2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.

### 제7조 분할해지

이 적금의 계약기간 중 최종 해지분을 포함하여 5회 범위내에서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 분할해지가 가능하며, 분할해지하는 금액은 에 대하여는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간별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.

### 제8조 금리적용

- ① 이 적금의 금리는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금리에 제②항 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적용합니다.
- ② 이 적금 가입일에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계약기간별 고시금리에 추가 적용합니다. 단 최고 연0.3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우대 항목	내 용
가족가입 우대	가족 2명이상이 동시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연0.2%
다자녀가정 우대	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인 경우 연0.1%
대가족 우대	가족 3대가 같은 세대를 구성 <sup>※</sup> 하고 있는 경우 연0.1%
추가거래 우대	본인명의 당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0.1%

(주) 주민등록등본을 통하여 동일세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 함.

③ 제2항의 우대금리는 만기에 해지할 경우에만 적용하며 중도해지 및 일부해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일부해지기록이 있는 적금을 만기해지 하는 경우에 최종 만기해지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.

### 제9조 이자

- ① 이 적금의 이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8조에서 정한 금리로 셈한 이자를 만기일 이후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- ② 예금주가 만기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만기후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#### 부칙(제정)

이 특약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

#### 부칙(1)

이 특약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.

#### 부칙(2)

2014년 5월 2일부터 신규하는 고객에 대하여 이 개정 특약을 적용합니다.

#### 부칙(3)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